

# 정정신고(보고)

2025년 4월 24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10월 7일

3. 정정사항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(기타비용,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 포함)
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VaR)
-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 변경 반영
-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(2025.01.01 시행)

항 목	정정요구· 명령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아니오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제2부. 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아니오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표준편차 → VaR)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 변경 반영	- 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 성(연환산)이 16.41%</u> <u>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 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</u> 으로 분류됩니다.  (불임1)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	- 이 투자신탁은 <u>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이 35.64%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</u> 으로 분류됩니다.  (불임2)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
제2부. 13.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작성

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				
제 2 부. 14. 나. 과세	아니오	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(2025.01.01 시행)	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 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-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(이하 생략)  -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<u>&lt;그림&gt;</u>	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- 별도의 소득과 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-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(이하 현행과 같음)  - 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 의무자(판매회사 등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 지급 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<u>&lt;그림 삭제&gt;</u>
제3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, 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제4부. 1. 다. 최근 2개	아니오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
사업연도      요약 재무내용 라.      운용자산 규모				
제5부. 4. 가. 이해관계인 과의 거래내역 나. 집합투자기 구간 거래에 관 한 사항	아니오	정기갱신	-	작성기준일 기준 작성

## (붙임1)

[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]

위험등급	분류기준	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
1등급	매우 높은 위험	25%초과
2등급	높은 위험	15%초과 25%이하
3등급	다소 높은 위험	10%초과 15%이하
4등급	보통 위험	5%초과 10%이하
5등급	낮은 위험	0.5%초과 5%이하
6등급	매우 낮은 위험	0.5%이하

- (주) 1.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. 따라서,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예 :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)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. 따라서,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(붙임2)

[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(97.5% VaR 모형 사용)]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
	매우높은위험	높은위험	다소높은위험	보통위험	낮은위험	매우낮은위험
97.5% VaR	50% 초과	50% 이하	30% 이하	20% 이하	10% 이하	1% 이하

(주) 1.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.  
따라서, 판매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 
2.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예 :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. 다만, 상기 분류기준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습니다.